

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미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429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6.

발의자 : 문미옥 · 고용진 · 윤종오
김정우 · 신용현 · 박정
이원욱 · 신경민 · 김병관
홍의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재·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, 소재·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,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관련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·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,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·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,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과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,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).

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법률안

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
제13조제1항제2호 중 “제15조 및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5조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 제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